

충청북도새마을공장등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새마을공장등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충청북도새마을공장등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농의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중 “고용증대와 농어촌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새마을공장과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를 “고용증대 및 농어촌소득원개발 촉진을 위하여 농어촌특산물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등에서 추진하는 농의소득원 개발사업에”로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중 “제5호”를 “제3호”로 하고, 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하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제6호중 “공업배치법시행령 제7조의 2 또는 제22조의 2의”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로 하여 제4호로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에서 농의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제4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2.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지구내에서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p>	<p>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에서 농의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p>
<p>3.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업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참여자</p>	<p>2.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물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동법시행령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p>
<p>4.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가공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p>	<p><삭 제></p>
<p>5.(생략)</p>	<p>3.(현행 제5호와 같음)</p>
<p>6.공업배치법 시행령 제7조의 2 또는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 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p>	<p>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9조의</p> <p>.....</p> <p>.....</p> <p>.....</p> <p>.....</p> <p>.....</p>
<p>②(생략)</p>	<p>②(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4조(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p> <p>② (생략)</p>	<p>제4조(면제신청) ①</p> <p>.....</p> <p>.....</p> <p>.....</p> <p>.....</p> <p>.....</p> <p>.....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u>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u></p> <p>②(현행과 같음)</p>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부분발췌)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 육성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되고 개발되는 일단의 공업용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다. 농공단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업을 유치, 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1.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가 설치된 시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3조 (경과조치) 3. 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 및 공업단지예정지와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직할공업단지를 제외한다)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는 이 법에 의한 농공단지로 본다.

제19조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1.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 자로서 당해 농공단지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얻은 사항을 변경 할때에도 또한 같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부분발췌)

제20조 (농외소득원의 개발) 농수산부장관은 농업외의 취업기회의 확대와 농어가 소득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농어촌의 농업소득외의 소득원(이하 “농외소득원”이라 한다)을 개발 또는 육성 하여야 한다.

제29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과 육성) 시장·군수는 농어촌의 부족자원과 유희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이하 “특산단지”라 한다)를 지정하여 이를 육성 할수 있다.

부 칙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1.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 (특산단지의 지정신청) 1.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이하 “특산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지정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부분발췌)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개발된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부 칙

제2조 (폐지법률) 공업배치및 공업단지관리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